

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김재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34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9.

발의자 : 김재국 의원 외 7명

1. 제안이유

-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안산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(안 제6조)
- 참여자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(안 제8조 ~ 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7. 조례안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조례안 예고 : 2023. 11. 3. ~ 2023. 11. 8.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걷기 사업” 이란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걷기 앱” 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(application)을 말한다.
3. “참여자”란 걷기 앱 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
2.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
3.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
4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맨발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
2.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·교육
3.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4.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
5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단, 제1호 및 제2호 사업의 담당은 시설 조성 부서로 한다.

1. 맨발 산책로(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)의 조성 · 확충 및 정비
2.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 · 보수
3.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
2. 문화상품권, 온누리상품권, 지역화폐
3.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

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협력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기록관리) 시장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명부 및 목표걸음 수,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개인정보 보호)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따른다.

제10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1)

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349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1월 25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맨발걷기 관련 조문을 삭제함.

□ 주요골자

- “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(안 제5조)
- “맨발걷기 등 걷기 활성화” 를 “걷기 활성화” 로 한다.
(안 제5조제1항제1호)
- 삭제 (안 제5조제2항)
- “제5조제1항제3호” 를 “제5조제3호” 로 한다. (안 제6조제1항)

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)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
2.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· 교육
3.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4.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
5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제1항제3호”를 “제5조제3호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5조(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)</u></p> <p>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맨발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.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·교육 3.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.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<p>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단, 제1호 및 제2호 사업의 담당은 시설 조성 부서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맨발 산책로(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)의 조성·확충 및 정비 2.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·보수 3.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.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<u>제5조(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)</u></p> <p>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.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·교육 3.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.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.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<p>제6조(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) ① 시장은 <u>제5조제1항제3호</u>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) ① -- -- <u>제5조제3호</u>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--	---